

2021
3. 2

KRIHS POLICY BRIEF
No. 80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요약

- 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음
- 특히 여행·숙박, 영화관, 테마파크, 항공사, 학원, 음식료 서비스업 업종의 부담 심각
- 2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매출 손실 지원과 함께 고정비용 중에서 특히 부담이 큰 임대료 지원의 요구가 큼
- 4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5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직접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음
- 미국·영국·일본 등은 고정비용(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정책방안

-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기준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
-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비용, 매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구축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와 관리 필요
- 3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이태리 부연구위원
이수옥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이윤상 부연구위원
최진도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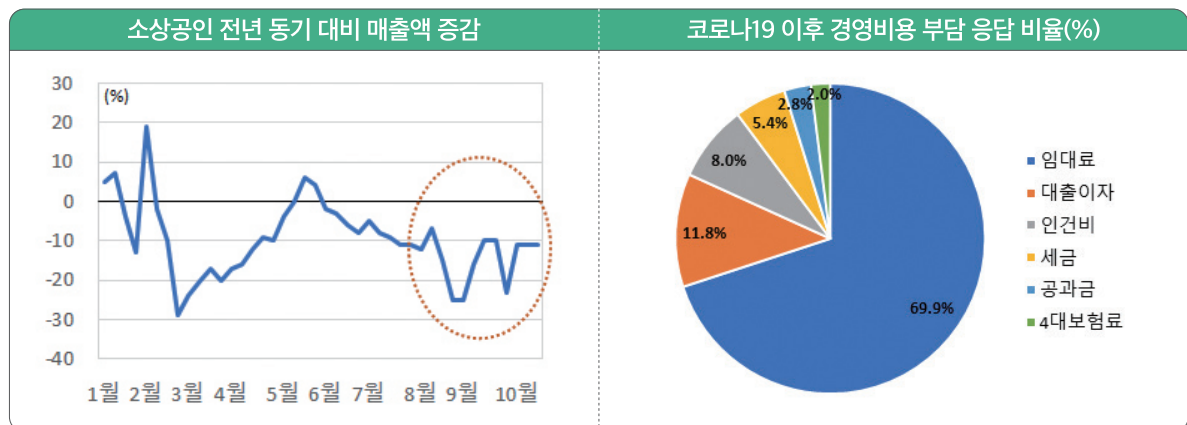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 지원, 경영 지원,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소상공인의 대응력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연합회(2020a)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80.2%, 매출에서 5~25% 비율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대료의 비중이 약 70%로 가장 비중이 높아 고정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출이자 약 12%, 인건비 약 8% 등의 순서임

그림 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매출 변화와 경영비용 부담 비율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 2의 그림 재인용.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 3의 내용으로 연구진 재작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바라는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5대 요구사항은 ①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②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③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④ 세제 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임(소상공인연합회 2020b)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20.9.29.)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하는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사상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함

표 1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1) 제10조 제1항 제1호(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 (2) 제10조의4 제1항 단서(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사유) 및 (3) 제10조의8(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제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해외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맥킨지 & 컴퍼니가 2020년 8월 유럽 5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2,200여 개 소기업(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 SME)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는 코로나19와 심각한 녹다운 수출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음(Mckinsey & Company 2020)
 - 이러한 곤경은 숙박·음식료·서비스업·농업·물류·도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음
-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 대출, 법인세율 인하와 이연,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강제퇴거 금지, 직접 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음

[영국] 자영업자소득보조금 지급, 종업원 임금 지원, 세금납부 기간 연장, 금융 지원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소득보조금 지원, 종업원 임금 지원, 세금납부기간 연장, 금융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

- 2020~2021년 동안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자영업자소득보조(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세 차례 시행하였음(U.K. Government 2021a)
 - 자영업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영업 중이지만 수요가 감소했거나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소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보조금은 연 이익이 5만 파운드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고, 3개월 평균 영업이익의 80%를 지급하는데, 7,500파운드를 초과할 수는 없음
-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줄 수 없어 종업원을 일시 휴직시켰을 경우의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대책(Job Retention Scheme)을 시행하고 있음(U.K. Government 2021b)
 - 풀타임·파트타임 등 모든 유형의 종업원에 대해서 임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의 80%를 요구할 수 있으나, 1인당 월 2,500파운드를 초과할 수는 없음

[미국]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상환 지원, 실업수당 확대, 임대료 지원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20년 3월·4월·12월 등 여러 번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상환 지원, 실업수당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19 원조·구제·경제 안보법)와 4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건강 관리 강화법), 12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통합세출법)를 통과시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상환 지원, 실업수당 확대 등의 내용 포함(김준현 2020)
-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대표적인 코로나19 지원대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운영,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이 직원 임금 및 임대료 지불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차후 대출금 전액 상환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 성격임(U.S. SBA 2021a)
 -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이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의 경우 10명 이하 직원의 고용주, 저소득 지역의 소액대출의 위해 최소 15만 달러를 책정(U.S. SBA 2021b)
 - 1차 지원 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전년도 직원 임금, 자영업자 본인의 순이익, 보험료 등 직원에게 들어가는 부대비용 등을 12로 나누고 2.5를 곱한 금액이며, 약 2.5개월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당 임금, 자영업자 본인의 순이익은 10만 달러까지만 인정됨(U.S. SBA 2021c)
 - 대출금에 대한 전액 상환면제는 대출 이후 8~14주 기간 동안 대출금을 직원 임금, 임대료 지불 등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했고, 60% 이상의 금액이 임금지불을 위해 사용해야 신청이 가능(U.S. SBA 2021b)

[일본] 매출 감소 사업장 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사업재개 투자비 지원, 대출 지원, 세금 납부 유예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경제대책을 발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지원대책도 포함하여 2020년 12월에 자영업 지원, 가게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한 경제부양책을 추가 발표

-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에 신형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의회는 이를 반영한 추경예산을 통과
 -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매출 50% 이상 감소로 사업지속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 엔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포함(국회입법조사처 2020a; 국회입법조사처 2020b)
- 1차와 2차 지원 시,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최대 600만 엔, 개인사업자 최대 300만 엔 지급,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일 1인당 1만 5천 엔 상한의 100% 보조금 지급(일본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2021)
 - 사업재개 투자비로 소규모 사업장 최대 150만 엔 지급, 매출 감소로 자금 변동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3년 무이자로 최장 5년 대출
 - 매출 감소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업자에게 1년간 무담보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 매출 감소로 고정자산세를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에 매상 감소 비율에 따라 납부액의 50~100% 감면 시행
- 3차 지원 시, 영업시간 단축 대상 음식점 등이 긴급사태 선언지역인 경우 1일 최대 6만 엔, 월 최대 180만 엔, 그 외 지역은 1일 4만 엔, 월 최대 120만 엔을 지급(일본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2021)
 - 자치단체장의 영업시간 단축, 수용제한, 인원제한 조치에 협조한 대기업 음식점과 영화관에 대해 해고가 없을 경우 1일 1인당 1만 5천 엔을 상한으로 100%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조치에 1개월 연장, 이외에도 음식점 시간단축 영업으로 피해를 보는 식자재 납품업자와 이벤트 관련 사업자를 지원하고 중소 사업자의 무이자 대출 및 대출 상한액을 인상함

[프랑스] 실업급여 지원, 군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프랑스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지원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지원, 군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등 포함

- 프랑스 정부는 GDP의 20%에 해당하는 4,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여 실업급여 지원,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세금 납부 유예, 자영업자 재정 지원 등을 실행(국회입법조사처 2020c; 국회입법조사처 2020d)

3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자영업자 지원정책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지원예산은 14.3조 원(1차), 7.8조 원(2차), 9.3조 원(3차)¹⁾ 규모이며,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50% 이상을 차지
 - (1차 지원 방향, 2020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40~100만 원)이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었음
 - (2차 지원 방향, 2020년 9월) 다양한 계층(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육아부담 가구, 생계위기 가구 등)에 지원됐으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등이 핵심지원사업임
 - (3차 지원 방향, 2021년 1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 약 580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 등) 및 폐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
 - (4차 지원 방향, 2021년 3월 예정)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될 예정이며, 임대료 직접지원을 통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금융위원회 2020)

표 2 재난지원금 지원 차수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구분	1차 지원((2020년 5월)	2차 지원(2020년 9월)	3차 지원(2021년 1월)	4차 지원(예정)
주요 지원 대책	가구원 수별 차등 현금 지원	대출 확대, 세금 감면 등	업종별 현금 지원, 이차 및 세금 감면	소상공인 중심 피해 규모별 (매출액) 현금 및 세제 지원
지원 방향	보편적·평등 지원	금융·세제 지원	소상공인 중심 현금 지원	중점피해업종 및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 주요 소상공인 지원대책(1~3차)

정부 지원대책	세부내용	지원부처	발표일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자금	• 집합금지업종(24만 명) → 300만 원 • 영업제한업종(81만 명) → 200만 원 • 일반업종(175만 명) → 1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2021.1.2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 대출금리: 2% 고정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2021.1.9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관계부처 합동	2020.11.12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원	• 저금리(연 0.25%) 융자대출: 업체당 3억 원 •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 자금대출: 2조 원	한국은행	2020.9.23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 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중 소상공인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비 등 임대료·인건비를 제외한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확진자 경유점포 300만 원, 휴업점포 1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2020.4.7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5조 원) • 1천만 원 초저금리 긴급대출(5.8조 원) • 소진자금 경영안정자금(2.7조 원)	관계부처 합동	2020.3.27

출처: 연구진 작성.

정부의 세액 지원은 코로나19 발현 이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은 하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심각한 손실 중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실업수당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1) 기획재정부(2020년)에 따르면,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아부담 가구, 미취업 청년 등,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에 지원함(김준현 2020).

4

코로나19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임대료·인건비 등), 특히 임대료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

- 해외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므로 임대료 기준 지원을 통한 피해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비용, 매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구축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와 정보 관리가 필요

- 현재 매출손실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출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중소기업벤처부와 같은 해당 부처에서 지속적인 정보 관리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지속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김준현 2020)
- 경제적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생 가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11월 12일.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1년 2월 15일 검색).
금융위원회. 202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월 7일. 보도자료.
일본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2021. <https://corona.go.jp/action/> (2021년 2월 15일 검색).
소상공인연합회. 2020a.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_____. 2020b.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국회입법조사처. 2020a.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제7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_____. 2020b.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_____. 2020c.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제1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_____. 2020d.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제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김준현. 2020.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U.K. Government. 2021a. Check if you can claim a grant through the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https://www.gov.uk/guidance/claim-a-grant-through-the-coronavirus-covid-19-self-employment-income-support-scheme> (2021년 2월 8일 검색).
_____. 2021b. Check if you can claim for your employees' wages through 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https://www.gov.uk/guidance/claim-for-wage-costs-through-the-coronavirus-job-retention-scheme> (2021년 2월 8일 검색).
U.S.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2021년 2월 10일 검색).
_____. 2021b. Top-line Overview of First Draw PPP.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top-line-overview-first-draw-ppp> (2021년 2월 10일 검색).
_____. 2021c. How to Calculate First Draw PPP Loan Amounts.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how-calculate-first-draw-ppp-loan-amounts> (2021년 2월 10일 검색).
McKinsey & Company. 2020. COVID-19 and European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ow they are weathering the storm.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european-small-and-medium-size-enterprises-how-they-are-weathering-the-storm> (2021년 2월 10일 검색).

-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italy@krihs.re.kr, 044-960-0639)
- **이수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swlee@krihs.re.kr, 044-960-0369)
- **이윤상**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yunsang@krihs.re.kr, 044-960-0375)

- **최진도**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원
(jdchoi@krihs.re.kr, 044-960-0653)
- **권건우**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원
(gwkwon@krihs.re.kr, 044-960-0669)

